



우리는 ^{학대노인} 자킴이!

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·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


방임
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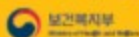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

24시간

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1577-1389

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

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

-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
-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
-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
- 시설 내·외부 활동 및 사회적(종교, 정치등) 관계에 참여할 권리
-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이성교제, 성생활,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
-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
-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

출처 2024노인복지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

노인인권실천을 위한 선서

- 어르신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,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교육통해 인권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
- 어르신에게 정서적학대, 언어적학대, 신체적 학대, 성적학대, 경제적학대, 방임, 자기방임 으로 부터 보호하겠습니다.
- 어르신에게 안전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.
- 어르신에게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선택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까지도 존중하겠습니다.
- 어르신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호의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.
- 어르신에게 필요한 자원연계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조하겠습니다.

